〈붙임 2〉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
○ 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라이노정보기술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버스정보시스템(Sniper IPS NE2000, DDX ND2000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)에 대해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(유지, 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4,104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 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㈜라이노정보기술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**

○ **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**
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시큐아이**

○ **기술지원 제품명 : 버스정보시스템(시큐아이 BLUEMAX NGF 1500 및 1000)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)에 대해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(유지, 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4,082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 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㈜시큐아이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 업 명 :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**

○ **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**
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 : 대형웍스(주)**

○ **기술지원 제품명** : 버스정보시스템(VPN Ahnlab TrusGuard 50B, 방화벽 TrusGuard 500B 및 500C, SecureGuard AM 서버 및 에이전트, 통합로그관리시스템 BizInsider Plus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)에 대해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(유지, 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7,025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 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대형웍스(주)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**

○ **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**
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케이씨에스 [kcs]**

○ **기술지원 제품명 : 버스정보시스템(서버 RX2520M5, Dell_R360, 백본 Cisco6807 2대, 스위치 WS-2960X, WS-C2960X, WS-C3850, C9300 2대)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)에 대해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(유지, 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9,927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㈜케이씨에스 (인)

〈붙임 2〉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 업 명 :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**

○ **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**
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아이비즈**

○ **기술지원 제품명** : 버스정보시스템(스위치 K2424 3대, K3200 3대, 웹방화벽 K2200 2대, VPN U5000, U7000, U1000E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)에 대해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(유지, 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21,818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㈜아이비즈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**

○ **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**
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아이웍스**

○ **기술지원 제품명** : 버스정보시스템[가상화서버 라이선스 3식(통합관리, 외부망, 내부망), 서버(IBM(S922,P720,X3650M4), CISCO C240, XR650시리즈 3대, AIS Power740, , 스토리지(IBM V7000시리즈 2대, Lenovo시리즈), SAN스위치(Cisco DS-C9148S 4대)]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)에 대해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(유지, 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26,376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㈜아이웍스 (인)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
○ 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우리정보기술㈜
○ 기술지원 제품명 : 버스정보시스템(관제시스템 S/W WatchAll, 서버 XR650-16C2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)에 대해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(유지, 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11,213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 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우리정보기술(주)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**

○ **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**
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비온모빌리티**

○ **기술지원 제품명** : 버스정보시스템S/W 일체(홈페이지, 승차벨, 초정밀버스, 연계(함안,김해,BIT,TAGO,OBE), API 등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.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.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.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)에 대해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(유지, 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.공급사의 물품공급.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78,055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.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.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.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.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 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㈜비온모빌리티 (인)

〈붙임 2〉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**
○ **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**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케이씨피시스**
○ **기술지원 제품명 : 버스정보시스템(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, 초정밀BIT, 김해연계 S/W)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)에 대해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(유지, 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16,230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㈜케이씨피시스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**
○ **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**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엔씨에스**
○ **기술지원 제품명** : 버스정보시스템(버스정보안내단말기 원스톱 신고시스템S/W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)에 대해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(유지, 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2,354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㈜엔씨에스 (인)

〈붙임 2〉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**

○ **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**
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명광**

○ **기술지원 제품명** : 버스정보시스템 시내버스 실시간 교통정보시스템 S/W 일체
(S/W세부내역 : 서버S/W, 통합관리PC S/W, 외부연계S/W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)에 대해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(유지, 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11,088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㈜명광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**
○ **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**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 : 굿어스데이터(주)**
○ **기술지원 제품명 : 버스정보시스템(Oracle DBMS)**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·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)에 대해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(유지, 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, 이전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·공급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기준 최고금액은 기초금액(금 36,205,000원, 부가가치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·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·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굿어스데이터(주)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 업 명 :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**

○ **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**
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 : 오오씨아이㈜**

○ **기술지원 제품명 :** 버스정보시스템(백업 Quantum Scalra i3 장비, Time Navigator S/W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』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.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.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.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)에 대해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(유지, 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.공급사의 물품공급.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5,952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.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.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.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.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1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오오씨아이㈜ (인)

<붙임 2>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**사 업 명 :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』**

○ **발주기관 : 경상남도 창원시청**

○ **제조사 또는 공급사 : 태웅산전**

○ **기술지원 제품명** : 버스정보시스템(무정전전원장치 2대 : SSECO-010, BLPN-2040-60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창원시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』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.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.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제조사.공급사는 낙찰자에게 위 물품(또는 S/W)에 대해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(유지, 추가, 증설, 연계, 업그레이드 등)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및 그에 대하여 특수 능력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능력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.공급사의 물품공급.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기초금액(금3,737,000원) 대비 낙찰율((낙찰금액/기초금액)*100%)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.

제4조(보안유지) 제조사.공급사는 기술지원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환경 및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지원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스템에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.형사상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.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.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일

발주기관명 창원시장 (인)

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(주)태웅산전 (인)